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은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7.

발의자 : 이은권 · 김성찬 · 박덕흠
홍문표 · 민경욱 · 김규환
김성원 · 윤상현 · 정유섭
이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(3년)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업무를 성능검사대행자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음.

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·방법·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무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사항이 없어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측량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합리

적 운영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공정성 강화 및 원활한 대행업무처리를 위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 준수 의무 및 시정명령의 조치, 성능검사대행업무 종사자의 교육 의무를 부여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·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(안 제9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- 나. 성능검사대행자뿐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「형법」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(안 제93조제4항).
- 다.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(안 제96조제9호 신설).
- 라.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그 소속 임직원의 교육의무를 부여하도록 함(안 제98조 제2항 신설).
- 마. 시·도지사의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부실에 대한 조사권한을 삭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조사 및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확

의 규정함(안 제99조제1항제4호).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과 다르게 측량기 기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92조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”를 “성능검사의”로, “절차”를 “절차,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조사 및 시정명령”으로 한다.

제93조의 제목 “(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)”을 “(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성능검사대행자는”을 “한국국토정보공사, 성능검사대행자 또는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”으로 한

다.

제9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제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99조제1항제4호 중 “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”를 “성능검사대행업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2조(측량기기의 검사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93조(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성능검사대행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</p>	<p>제92조(측량기기의 검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제9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 대행자는 제1항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과 다르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 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p> <p>⑥ 성능검사의 ----- 절차,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조사 및 시정명령 ---.</p> <p>제93조(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한국국토정보공사, 성능검사 대행자 또는 그 검사업무를 담</p>

	<u>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u>
제99조(보고 및 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	제99조(보고 및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생 략) 4. <u>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② ~ ④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성능검사대행업자가 ----- ----- ----- --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